2027년도 전반기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한국연구재단에서는 『2027년도 전반기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활용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30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원화

1. 사업목적

○ 연구개발경험이 풍부한 고급 과학기술자와 국가기관의 고위 정책관리자, 산업체의 경영자 등 유능한 전문경력자가 재직기간동안 축적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후진에게 전수**

○ **지방에서**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학문 분야를 교육, 연구함으로써 과학기술 응용능력을 포함한 종합적 경영 관리능력을 갖춘 **지역 인재 양성으로 지역 발전 견인**

2. 사업내용

□ 지원 조건 (필수)

○ **(대학)** 대학(원), 전문대 등에서 정규강의 전담(매 학기 1강좌 이상)

○ **(교육훈련기관)** 활용기관에서 1년 30강의(온라인 강의 포함) 이상 또는 교재개발 전담

○ **(연구소 및 지역개발)** 활용기관이 주관하는 연구비 1,000만원/년 이상의 사업(연구과제, 지역특화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매 2주 32시간 이상 근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58과제

○ (지원금액) 최대 3년(2+1)이내* 연구장려금 360만원 이내/월** 지원

* 2차년도 기간 내 단계평가 후, 차년도 진입 여부 결정

** 활용기관에서 월 120만원 이상 매칭부담 시, 재단에서 그 차액을 지급(평가시 우대)

○ (지원부문) 교육 및 연구 부문 / 지역개발 부문

구 분	활용기관 및 수행 업무
①교육 부문	· **(대상)** 지방소재 4년제 대학(원) 및 전문대, 4대 과기특성화대학, 사관학교* 및 경찰대학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사관학교 및 경찰대학 등(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지침 제4조 제1항제1호) (수도권 소재 제외기관 예외 사항) · **(지원조건)** 대학(원), 전문대 등에서 매 학기 정규강의를 1강좌 이상 전담
②연구 부문	· **(대상)** 지방소재 「공무원인재개발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침에서 정하는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 ⇒ 대상기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지원조건)** 연 30강의(온라인 강의 포함) 이상 또는 교재개발 전담
	· **(대상)**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 연구수행이 가능한 지방소재 기관(연구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 **(지원조건)** 연구과제 수행* * 사업비 1,000만원 이상/연, 참여시간 32시간 이상/매 2주
③지역개발 부문	· **(대상)**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 **(지원조건)** 연구과제 수행* * 사업비 1,000만원 이상/연, 참여시간 32시간 이상/매 2주

※ 관련: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지침 제4조

3. 신청자격

□ 전문경력인사 자격요건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활용개시일('27.3.1.)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

* 1962년 3월 2일 이후 출생자

② 활용개시일('27.3.1.) 기준으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

* 단, 퇴직 후에 경력과 유관한 기관으로 이동하여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 유관 기관 경력을 최대 2년까지 별도 인정(사업신청서 접수 이후 요건심사위원회에서 인정여부 판단)

※ 활용개시일 기준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사기업 등에서 상근직 재직 또는 연 36백만원을 초과하는 보수를 수령할 경우 또는 부패행위 징계내역이 있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단, '27년 후반기부터는 활용개시일 기준 상기 보수 수령 기준액을 연 43.2백만원으로 변경 예정)

③ **퇴직 경력**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교육 및 연구 부문

-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상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 재직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재직한 사람
- 「군인사법」상 장성(將星)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
- 「경찰공무원법」상 치안총감, 치안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경찰청장을 역임한 사람
- 「소방공무원법」상 소방총감, 소방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을 역임한 사람
-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고위경력 및 연구관리 경력자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시)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의 상근 임원. 다만, 공공기관 중 대학과 병원의 상근 임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나 대학 혹은 병원의 상근 임원이 「고등교육법」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책임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기관 내 최상위 직급)으로 근무한 사람. 다만 공공기관 중 병원과 대학은 제외
 - 종업원* 100명 이상 산업체의 등기상 상근 임원(과학기술 관련 산업체의 경우에는 비등기 상근 임원을 포함)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기업신용정보회사 등 공시자료 기준
 * 산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총 인원수이며, 파견근로자, 일용직(아르바이트 등)은 종업원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역개발 부문

- 「국가공무원법」상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에 재직한 사람. 다만,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 「군인사법」상 장성(將星)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
-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서 중견경력 및 연구관리 경력자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의 상근 임원. 다만, 공공기관 중 대학과 병원의 상근 임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나 대학 혹은 병원의 상근 임원이 「고등교육법」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에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책임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기관 내 최상위 직급)으로 근무한 사람. 다만, 공공기관 중 병원과 대학은 제외
 - 과학기술 관련 국공립연구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15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관 또는 지도관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 연구원 30인 이상의 민간연구기관 동일 분야에서 15년이상 근무하고 책임급(부장급)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 종업원* 50인 이상 산업체의 등기상 상근 임원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기업신용정보회사 등 공시자료 기준
 * 산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총 인원수이며 파견근로자, 일용직(아르바이트 등)은 종업원수에 포함하지 않음

□ 활용기관 요건

① 교육 및 연구 부문

○ 대학 및 대학원대학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4년제 국·공·사립대학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공·사립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 제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설치된 대학의 지방 분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의 연구기관 중 과기특성화대학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사관학교 및 경찰대학 등

○ 연구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 연구 수행이 가능한 기관(연구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 교육훈련기관

구분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설치한 교육훈련기관	공운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과학기술분야 교육훈련이 목적인 기관
신청가능 활용기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② 지역개발 부문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서울·경기·인천

< 유의 사항 >

1.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하는 기관(대학·연구소, 교육훈련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은 활용기관에서 제외**
 ※ 다만, 특수한 전문경력을 필요로 하는 특수고등교육기관이 수도권에만 소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활용기관이 될 수 있음
2. **기관별 최대 활용가능인원의 제한이 있으므로 [별첨]의 기관별 활용가능인원 참조**
 ※ 단, 활용가능인원이 있더라도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자가 없을 수 있음
3. **지역개발부문의 경우, 신청·선정결과 및 기타 사업관련 문서는 사업을 신청한 광역자치단체(도 또는 광역시)로 배부되오니 관련 부서의 사전 협조 필수**
 ※ 사업 신청 시, 광역자치단체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재 요망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2026.10.30. ~ 11.30. 18:00까지(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접수기간) 2026.11.09. ~ 11.30. 18:00까지

※ 공문 제출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s://ecm.nrf.re.kr)에 작성 및 등록 완료된 시점 기준

○ (공고방법) 재단 홈페이지 및 NTIS시스템 공고

※ 대학, 공공기관(연구소), 지방자치단체(광역), 과학기술관련단체(과학기술인협동조합 등) 공문 발송 및 e-알리미 등 추가 안내 예정

○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https://ecm.nrf.re.kr)상 지원서 작성 및 공문 제출

※ 공공기관의 부설기관은 상위 공공기관을 활용기관으로 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활용 가능인원 규모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므로, **상위 공공기관의 명칭을 공문에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누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당해 출연기관 포함) 활용인사는 해당 광역자치단체를 통하여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https://ecm.nrf.re.kr) 작성 및 등록 완료 후, 제출완료 공문이 재단으로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됨(기한 내 접수 미완료 시 신청 불가)

※ 접수마감 이후 신청서 수정, 자료 변경 또는 추가 제출 불가

○ (제출서류)

- (온라인 서류접수) 신청 공문을 제외한 모든 파일은 사업관리시스템(https://ecm.nrf.re.kr)에 입력 및 제출

구분	제출자료	제출방법	비고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시스템 입력	별도 양식[별첨1] 참조
2	활용계획서	시스템 입력	-
3	활용계획*	파일 업로드	별도 양식[별첨2] 업로드
4	학력·경력·업적서	시스템 입력	-
5	학력·경력증명서	파일 업로드	-
6	산업체 등기부등본 사본	파일 업로드	산업체 경력자 중 등기임원
7	해당 기관 직제규정 (최고직급 명시된 부분)	파일 업로드	최종경력이 공공기관일 경우에 한함

* 활용계획(3) 제출 시, 활용계획서(2) 합본 금지

- (공문 제출)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통해 사업 신청 사실 제출(신청 인사명 기재)

※ 전자문서 유통 불가 시 해당 공문을 이메일(ecm@nrf.re.kr)로 제출

5.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절차

접수	요건심사	서면평가	종합심사
·활용기관으로부터 신청서 접수 (사업관리시스템)	·초빙대상 인사의 자격요건 등 검토 ·신청부문 및 과학기술계 여부 분류	·심사위원별 활용계획서 서류심사	·전문경력인사 및 지원대상기관 선정
<연구재단>	<요건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 평가항목

평가항목	활용목적의 명확성	활용내용의 충실성	초빙인사의 부합성	교육, 연구 또는 사업의 내실화	활용 분야 진흥 기여도	합계
배점(점)	15	20	30	15	20	100

< 신청 시 유의사항 >

- **활용기관별 활용가능 인원(TO)의 수를 초과하여 선정할 수 없음**
- 신청서 평가 시, 연구장려금을 월 120만원 이상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으며, 우대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함(취득 점수의 3% 가점 부여)
- 심사위원회는 신규 과제 선정 시 **총선정자 중 50% 이상**을 과학기술계 전문경력인사로 선정함. 다만, 전체 신청자 중 과학기술계 전문경력인사 **신청자 비율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전문경력인사의 신규 선정 시 **출신분야별 선정자의 수가 전체 선정자 수의 15%를 초과해서는 안됨**(출신분야별 구분은 지침 제15조제3항 참조)
- 활용기관이 전문대학인 경우, 선정자의 수가 **전체 선정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활용기관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기관평가 미인증대학이거나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 위기대학에 포함될 경우 선정하지 않음**
- 선정된 자 중 포기 또는 선정취소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비선정자를 운용할 수 있음
-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대상 제외**
- 퇴직기관과 활용기관이 동일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문경력인사의 활용기간은 사업 신청 시, 활용기관의 **자체규정(예시: 정년 등) 및 총 활용기간(최대 3년)을 고려**하여 신청
- 활용기간 중 타 기관에서 ①상근직으로 근무하거나, ②비상근직이어도 연 보수가 4,32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외 활동을 한 경우에는 사업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참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지침

6. 향후 일정

추진 일정	추진 내용
2026. 12월	선정평가 실시
2027. 1월	선정결과 공고
2027. 2월 이후	후속조치 추진(협약체결 등) 및 사업개시(2027.3.1.)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7. 적용규정

○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지침」(한국연구재단 내규)

별첨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양식 1부
2. 활용계획 작성양식 1부
3.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지침 1부
4. 기관별 활용가능인원(TO) 현황('26.10. 기준) 1부
5.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 1부
6. 접수 매뉴얼 1부